

민간주택임대자금(전·월세)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은행제출용)

항목	확 인 사 항	본인 확인
대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에서 정한 군 간부 전세자금 대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 제한 국방부와 보증보험회사가 정한 신용평점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 제한 (舊 개인신용등급 1~7등급까지는 지원 가능/ 8~10등급은 지원 불가) 금융권에 전세자금대출, 보증부월세대출 또는 부대에서 받은 원금대부금이 있는 경우, 전액 상환 필수 (상환영수증 은행 제출) 	
대상 주택	· 대상주택이 공부상 '주택' 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근린주택 등 불가)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로 다음의 제한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X
	① · 공동 또는 지분소유 부동산 (단, 공동소유 또는 지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보전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가능)	
	② · 전세권 설정된 부동산 (해지조건으로 취급가능)	
	③ · 공부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있는 부동산 (해지조건으로 취급 가능)	
	④ · 근저당 금액과 전세대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주택 (해지조건으로 취급 가능)	
	⑤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군 간부)과 대출 신청인, 임대인 (집주인)과 임차목적물의 소유주가 불일치하는 부동산	
	⑥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주택임대차 계약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 예외 인정]	
	⑦ · 미등기 건물 (단, 준공검사가 완료된 아파트로 분양대금이 완납된 경우 가능)	
⑧ · 임차인 본인 이외에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단독주택		
대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추천서 금액으로 하되 운용협약서에서 정한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대상주택 시세에서 선순위 설정최고액 차감 등 	
채권 보전	· 대부신청자가 전세보증금 담보설정 은행 업무처리 관련하여 사전에 임대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	
	① · (은행-대부신청자) 주택임대차 (전·월세보증금) 담보설정 계약 체결 (은행 양식)	
	② · (신용정보회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 및 담보설정 유선 안내	
	③ · (임대인에 대한 업무처리 진행)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인이 직접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 - 임대인에게 질권설정통지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배달증명부로 우편송부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담보설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출진행이 불가하고 위의 ① ~ ③의 업무처리가 완료된 경우 대출이 실행되며, 공동임대인인 경우 모두가 담보설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은행으로 사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에 대한 확인 등 은행의 업무절차가 진행됨) 대출기간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주민등록전출, 실거주 이탈 등) 주택임대차 (전·월세)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임차주택을 이전하는 경우는 기존 주택의 주택임대차 (전·월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새로운 주택에 대한 전·월세자금 대출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 대출신청자는 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본인확인란에 체크(√), 서명하여 협약은행에 제출
본인은 용자추천서를 은행에 제출함에 있어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출신청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